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비 집행기준



[지원사업 개요]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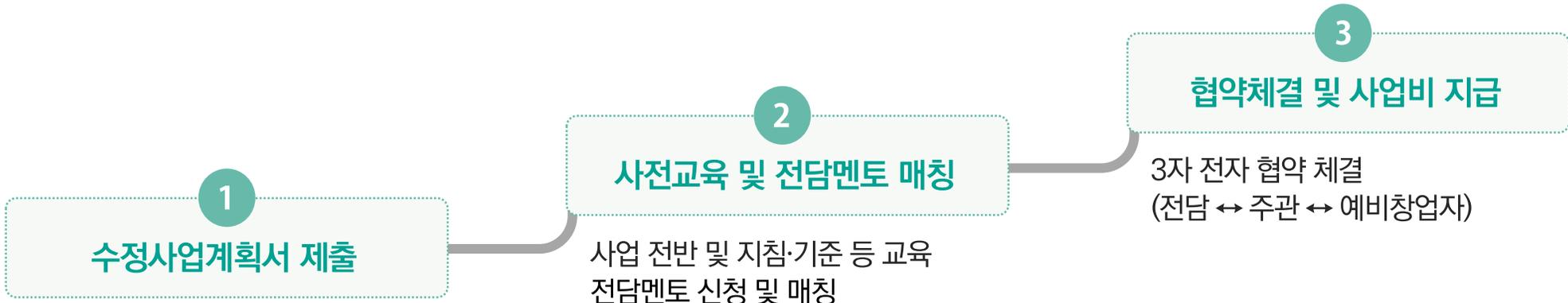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 자금 · 맞춤형 멘토링 등을 지원

모집구분 (모집기간)	주관기관	모집인원		지원한도
일반분야 2.23(목) ~ 3.15(수)	창조경제혁신센터 (11 개)	349명	총 연령	최대 1억원 (평균 0.5억원)
	대학 (14 개)	443명		
특화분야 2.23(목) ~ 3.15(수)	벤처기업협회 (소셜벤처)	100명	총 연령	
	한국여성벤처협회 (여성)	100명		

협약절차

 **협약기간 총 8개월** 

협약종료 2개월 이전 창업 이행,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 유지 필수
(협약기간 : '23.5.1. ~ 12.31.)



1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선정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수정,
배정된 사업비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

2
사전교육 및 전담멘토 매칭

사업 전반 및 지침·기준 등 교육
전담멘토 신청 및 매칭

3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3자 전자 협약 체결
(전담 ↔ 주관 ↔ 예비창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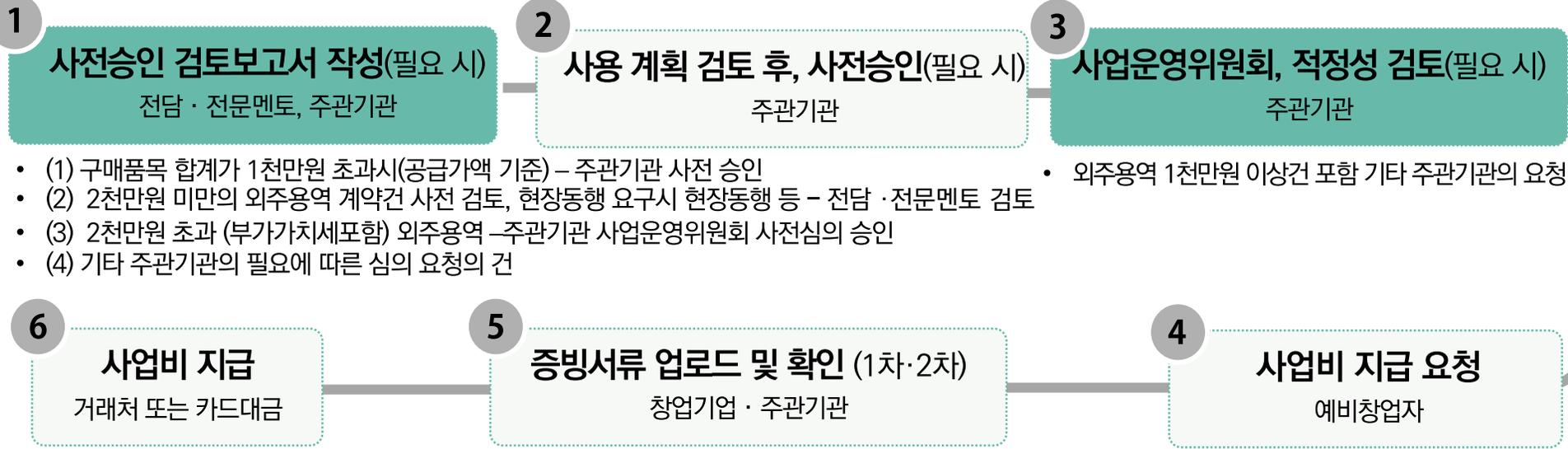
승인·관리

사업비 집행 프로세스

- ① 사전검토 (전담멘토) : 사용 계획 검토(필요시)
- ② 사전승인 (주관기관) : 사용 계획 승인(필요시)
- ③ 사업비승인 (주관기관) : 실 사용 승인

🚨 모니터링 시스템 상시 가동 🚨

- (1) 회계법인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운영,
- (2) 이상거래 자동탐지 시스템 운영



- (1) 구매품목 합계가 1천만원 초과시(공급가액 기준) - 주관기관 사전 승인
- (2) 2천만원 미만의 외주용역 계약건 사전 검토, 현장동행 요구시 현장동행 등 - 전담·전문멘토 검토
- (3) 2천만원 초과 (부가가치세포함) 외주용역 -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사전심의 승인
- (4) 기타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른 심의 요청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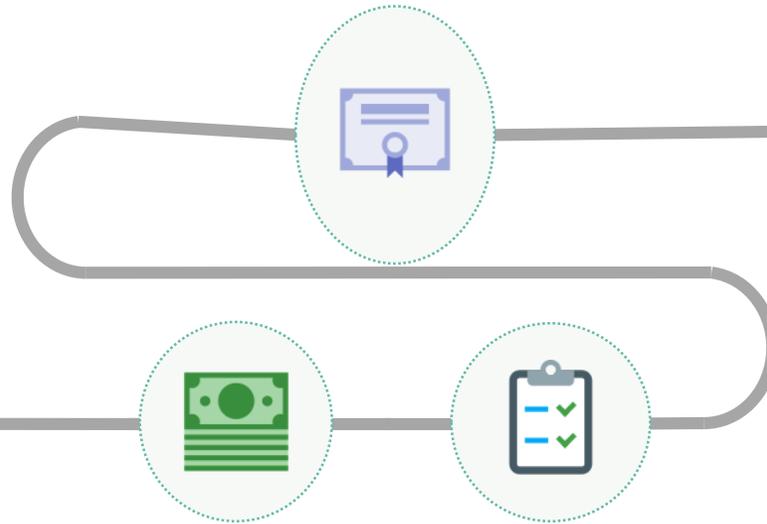
- 외주용역 1천만원 이상건 포함 기타 주관기관의 요청 시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닌 사업비 사용건이라 할지라도
 (1) 통합관리지침, (2) 세부관리기준을 필히 확인하고 사용

사업수행

최종점검 및 성과평가 (주관기관 → 창업자)

- 점검결과, 완료(최우수·우수·보통), 성실실패, 실패 판정
- 성과평가 기준 변경 예정
(’22) 절대평가 → (’23) 상대평가(상위 10% 최우수)



사업수행 : 협약 기간 전체 (8개월)

- 전담·전문 멘토링 진행 ((의무) 전담 멘토링 6회, (선택) 전문멘토링 4회)
- 멘토링 매칭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 이용 자율 매칭)

중간점검 (주관기관 → 창업자) : 협약 기간의 1/2 시점

- 점검결과 계속, 보완, 중단, 판정

수시점검 (주관기관 → 창업자)

의무사항 미이행 및 기타 중대 사유 발생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시

현황점검 (전담멘토 → 창업자)

전담멘토의 현황점검을 위한 사업장 방문, 직원 근무현황, 기자재 관리현황 등 점검

주요 유의 사항

창업기업 대표 및 채용된 직원도 협약 기간 내 “예비창업패키지 사전교육” 필수 이수 (미 이수시 인건비 지급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창업프로그램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주관기관별 체계적인 창업프로그램 제공

창업프로그램 참석 권장

선정된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참석 권장

※ 프로그램 참석 권장

필수프로그램

①BM 고도화, ②MVP제작, ③후속연계 프로그램

주관기관별 상이

협약기간 내(선정된 예비창업자 등)

구분	프로그램명	운영 목표	비고
1	BM 고도화	전문가 컨설팅(기술, 경영 등), 멘토링 기반 프로그램을 통한 예비창업자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총 2 필수
2	MVP 제작	MVP 제작 업체 매칭, 기술 진단, MVP 제작 멘토링 등	
3	후속연계	예비창업패키지 수혜기업의 생존율 제고, 성과 창출 등을 위한 후속 지원 프로그램	

자율프로그램

주관기관별 특징점을 살린 자율 프로그램

주관기관별 상이

협약기간 내(선정된 예비창업자 등)

구분	운영 목표
자율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창업자 육성, 사업화 지원 등 주관기관별 특성에 따른 자율 프로그램 3개 이상 필수 운영(예비창업자 발굴,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프로그램) (예시) 코칭데이,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MD 상담회, 마케팅 지원 등

기타프로그램

①전담-전문 멘토링, ②창업상담창구 운영, ③창업교육

주관기관 공통

협약기간 내(선정된 예비창업자 등)

구분	프로그램명	운영 목표	비고
1	전담-전문멘토 (23년 사업참여기업)	창업경험 관련 지식-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전담멘토로 지정하여 창업자와 매칭하여 경영-자문 등 서비스 제공	-
2	창업상담창구 (예비창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창업자 발굴을 목적으로 주관기관 내 3년이상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온·오프라인 창업상담창구 운영(주 1회 이상 / 유선대란) 전문분야에 대한 상담 필요시 외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매칭 수행(주관기관별 전문가 Pool 구성 필수) 	-
3	창업교육 (23년 사업참여기업)	기업가 정신, 아이디어 도출개선 및 BM 구체화 등 기초부터 마케팅, 투자 등 선택형 실천 창업교육 제공	-

전담멘토

다양한 분야의 멘토를 만날 수 있는 창업이음 멘토링 시스템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 홈페이지 (oms.k-startup.go.kr)

나의 관심멘토

관심멘토 목록

나의 멘토링 일정 목록

전담멘토신청

전담 멘토 신청

멘토링 만족도 평가

[사업비 집행기준 안내]

사업지침

창업기업 제재 조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內
[붙임 제2호] 참조

예비창업패키지 지침·기준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등 사업 관련 중요사항 안내

예비창업패키지 세부 관리기준

- 개정 < 2019.05.02. >
- 개정 < 2019.06.21. >
- 개정 < 2020.04.06. >
- 개정 < 2021.03.29. >
- 개정 < 2021.07.08. >
- 개정 < 2021.08.02. >
- 개정 < 2022.08.16.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예비창업패키지 세부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관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창업패키지"란 총괄기관의 기본계획에 따라 전담기관이 창업기업 지원 의무를 보유한 주관기관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자의 성장 지원을 지원하고, 창립의 일차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부제 추진단"이란 4차 산업 등 특화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로 구성된 범부의 협력체를 말한다.
 3. "전담연계"이란 예비창업패키지 업무만을 전담(종여율 100%)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소속 인력을 일하며 총괄책임자, 경리인원, 전담번호 또는 번호 역할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4. "결재연계"이란 주관기관 내 사업 및 업무(태와)의 경우 교수직 등과 등 사업의 업무를 겸하여 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5. "전담번호"란 창업기업과 매칭되어 사업 진도 관리, 창업경영 자문 등에 대한 번호만을 제공하는 창업경영 및 시장기술 분야에 총부담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기자를 말한다.
 6. "창업교육"이란 창업자 역량을 강화하고,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제공하는 창업기초 및 실무교육을 말한다.
 7. "창업프로그램"이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주관기관에서 구성·운영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예비창업패키지 세부관리기준



지침 등을 미준수하여 중요사항을 위반할 경우,
제재 및 사업비환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 활동을 위해 지침 및 기준을 반드시 숙지

다운로드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k-startup.go.kr) – 고객센터 – 자료실 – 예비창업패키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2023. 2. 20.,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4조(목적)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인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창업자"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2. "창업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자, 예비창업자 중 지원사업 공고문 상의 사업 용역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이거나 창업자인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창업연계"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4. "창업도약기업"란 창업연계(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후부터, 사업 개시일 기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5. "창업연계주거"란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6. "계정창업기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계약하여 지원사업 공고문 상의 사업 용역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이거나 계약창업자인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업"이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창업 활동과 지원사업을 말한다.
 8. "총괄기관"이란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통합관리지침 수립 등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말한다.
 9. "관리기관"이란 사업운영 방식에 따라 총괄기관의 일부 업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특별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시·도를 말한다.
 10. "전담기관"이란 총괄기관의 업무 세부 사항을 관리기관과 협력하여 직접 또는 주관기관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창업연계총괄" 또는 법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해 총괄기관의 장이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11. "중소벤처기업부"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사업화자금

사용방법



전용카드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제품·서비스 구매 후, **공급가액**에 한하여 지급 신청

* 사업비카드에 적용된 카드 포인트 사용 금지, 사업비카드 이외의 개인 또는 법인카드 사용금지

** 부가세 부분은 예비창업자가 직접 부담



전자세금계산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급가액**에 한하여 지급 신청

* 부가세 부분은 예비창업자가 직접 부담

유의사항

- **협약기간 이내에 집행 건의 공급가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
- 예비창업자 사업비 집행 패턴 등을 분석하여 부정집행 방지를 위한 **이상거래 자동탐지 시스템** 가동

보조세목

집행 기준

창업활동비(월 50만원 한도) 외 타 비목의 경우, 협약 금액 내에서 자율 집행 가능

비목 / 세목	보조세목	정 의
재료비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일반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비품,SW등)	자산취득비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일반수용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보수	창업기업 소속직원(정규직)에 대한 보수
	기타직보수	창업기업 소속직원(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상용임금	창업기업 소속직원(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
	일용임금	사업 수행을 위한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 등 임시직에 대한 보수
	복리후생비	창업기업 소속 근로자(4대 보험 가입자)의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지급수수료	일반수용비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운반비, 보험료, 법인설립비(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활용시), 회계감사비
	임차료	기자재 임차료, 사무실 임대료, 보관료
여비	국외여비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타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일반수용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일반용역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창업활동비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월 50만원 한도)을 지급하는 경비

재료비

정의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구매하고자 하는 재료가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 연관성이 있어야 함
- **협약기간 내에 납품이 가능**한 재료비에 한해 집행 가능
- 재료 또는 원재료 구입에 따른 배송비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유의사항

- ※ 금속, 보석, 원석 등은 원칙적으로 구매가 불가하나,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 시 필요연관성이 높고,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구매가능
- ※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매 수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주관기관에서 사업비 집행을 제한할 수 있음
- ※ 국외 기업과의 구매 거래 시 관세는 동 사업비로 집행 불가
- ※ 시제품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되는 가구, 비품 등은 기계장치비로 구매



위반사례



- 멀티탭, 키보드 등 사무용품 구입
- 시제품 재료 과다 구매
- 시제품 재료를 기성품으로 과다 구매
- 구매한 재료가 협약기간 내에 미납품
- 시제품과 관련성이 적은 재료 구입

외주용역비

정의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없는 경우, 외부업체(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에 의뢰·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

- 사업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시제품 제작, 시장조사, 연구용역 등이 필요한 경우 집행
- 외부전문업체(외주용역업체)는 1년 이상의 해당분야 종사경력(사업자 개시일로부터 1년 초과), 외주용역대상 창업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의 제작경험 보유 필요
- 외주용역비는 수행완료 후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분할지급(선금금(총 계약금의 50% 이하), 잔금)으로 집행 가능. 선금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선금금보증보험증권을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각서로 대체 가능

유의사항

※ 외주용역 결과물이 정산시점에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는 경우 사업비 집행 불가(예시 : 과업범위 이하의 개발결과물 도출, 온라인 스토어 미등록 등)

※ 선금금은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집행 불가

※ 외주용역의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업종의 연관성 부재 시 집행 불가

※ 외주용역 1,000만원 이상 또는 1년 이하 업력의 업체와 외주용역 계약 체결 시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

*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은 주관기관에서 전담멘토 검토의견서, 각 용역 관련업계 등 전문가의견을 포함한 내부문서(검토결과 포함) 또는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승인

* 외부 전문업체(업력 1년 미만)에 과업을 위탁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창업아이템과의 연관성, 과업수행 가능성, 보유역량, 용역비용, 과업 수행기간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

※ 외주용역 2,000만원 초과(부가세 포함) 하는 경우 세무관리 기준 내 “세부 점검 항목”에 따른 주관기관 심의 후 사전 승인 받은 것에 한해 집행 가능 하며, 비교견적서 구비 필수

※ 당해년도 동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간 거래, 창업기업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과의 외주용역 거래가 불가함이 원칙

외주용역비

유의사항

- ※ 프리랜서 또는 중계서비스를(크몽, 위시켓 등) 통한 사업비 집행 불가
- ※ 창업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계약 파기 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 ※ 양산목적의 금형제작비는 집행 불가



위반사례



- 외주용역비용 과다 지급
- 개발 결과물 미흡 (홈페이지, App개발 용역 결과물이 정산시점에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거나, 온라인스토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 용역 계약업체(A)와 실제 진행업체(B) 상이

● ● 기계장치비 (공구, 기구, 비품, SW 등)

정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 개인용 PC, 노트북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무용 컴퓨터(모니터포함), 사무용복합기, OA기기, 범용 S/W 구입비로 집행 가능
- 기계장치 구입에 따른 배송비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유의사항

- ※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납품되는 기자재 구입비(S/W 구입비 포함)로 집행
- ※ 구매한 기자재는 협약기간 내에 「00년 예비창업패키지 창업기업 지원사업 자산」으로 구분하여 협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5년간 관리하여야 하고, 구매한 기자재는 임의처분 불가
- ※ PC, 노트북 등 개인 사무용 컴퓨터는 대표, 재직 임직원(4대 보험 가입자) **1인당 1대에** 한하여 구입 가능
- ※ 중고 기계 또는 중고 설비 등 구입비로 집행 가능하나, 개인간 거래는 불가, 사업자등록증상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기타 중고상품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 장비 소매업 등” 중고상품이나 제품 취급이 명시되어 있거나 실제로 중고 거래 영위 기업(사업자)과 거래에 대해 집행 가능
- ※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생활가전 등 구입비로는 집행 불가. 단,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활가전은 주관기관 승인을 득한 후 구매 가능
- ※ 통신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등)는 사업화계획서 상의 시제품제작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 가능. 통신비 지급방식으로 구매한 경우 협약기간 동안의 통신비로 집행 가능
- ※ 아이템 개발을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카메라, 캠코더 등 촬영기기 및 장비 구입 가능
 - * 단, 단순 제품홍보를 위한 촬영용 카메라, 캠코더 등 구입 불가

● ● 기계장치비 (공구, 기구, 비품, SW 등)

정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 개인용 PC, 노트북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무용 컴퓨터(모니터포함), 사무용복합기, OA기기, 범용 S/W 구입비로도 집행 가능
- 기계장치 구입에 따른 배송비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유의사항

※ 단순저장장치(USB, 외장하드 등) 또는 단순소모성 부품(USB증폭기 등)의 경우 창업활동비 활용



위반사례



- 전시참가용 TV, 통장프린터기, 프로젝터 등 생활용 가전제품 구매
- 실험대, 실험거치대 등 창업자의 사업아이템과 관련성이 낮은 기자재 구매
- 기자재 구매 기한 초과하여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 납품 미준수) 구매
- 무선키보드, 외장하드 등 컴퓨터 주변기기 * 창업활동비로 집행 원칙
- SSD, GPU, 메모리 등 PC 성능 향상 부속품 * 창업활동비로 집행 원칙

특허권 / 무형자산 취득비

정의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

* 산업재산권, 특허 출원 및 등록비, S/W등록 포함 저작권 등

- 창업아이템 사업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산업재산권, 특허, S/W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을 집행 가능
- **협약체결 이후 출원한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선행기술조사비, 우선심사청구비 집행 가능
- 출원인(최종권리권자)은 창업기업 본인(법인은 창업자 본인이 대표이사일 경우 법인명으로 출원)이어야 함

* 단, 타인 또는 타기관 등과의 협약에 의거 공동 출원을 해야 할 경우 출원 및 등록비용은 등록원부에 기재될 예상 지분율에 비례하여 부담

유의사항

※ 협약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관련비용(선행특허조사비, 우선심사청구, 등록비 등)과 등록 시 발생하는 대리인 성공보수료는 집행 불가

※ 특허 등록에 발생하는 성공보수의 집행은 불가



위반사례



- 협약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관련비용 (선행특허조사비, 우선심사청구, 등록비 등) 집행
- 특허 등록에 발생하는 성공보수의 집행

인건비

정의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대표자 인건비 제외)

- 협약기간 중 신규로 채용한 인력과 기 고용된 인력의 인건비 집행 가능. 단, 신규 채용인력은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신규 채용한 인력에 한하여 인건비 집행 가능**
- 인건비는 사업자 개시일 이후 '4대 보험' 가입직원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사업자(기업)부담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 창업기업은 인건비를 선 지급 후 주관기관에 해당 인건비 지급을 요청하거나, 운영기관에 해당 월 인건비를 사전 요청하여 집행
- 아래의 표에 '인건비 산정기준' 표에 따라 소속직원의 인건비를 산정하고, 직원의 최근 3년 이내의 소득이 법정최저 급여 이하였던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의 인건비 산정기준 적용

구분	인건비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비고
최근 3년 이내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연도 원천징수 전 급여총액 / 해당연도 근무개월 수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등 확인
최근 3년 이내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아이템이 제조업인 경우 : 법정최저 월 급여 ~ 최대 월 3,974천원×참여율×참여개월 수 • 창업아이템이 지식서비스업인 경우 : 법정최저 월 급여 ~ 최대 월 4,915천원×참여율×참여개월 수 *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보고서 임금 기준 	해당 금액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인건비

유의사항

- ※ 창업기업 **대표자**는 사업비로 인건비 집행 불가
- ※ 인건비 지급대상 직원은 타 정부지원금(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대응자금 또는 현물로 활용 불가
(타정부지원사업의 대응자금 또는 현물로 등재된 직원은 인건비 지급 불가)
- ※ 창업기업은 인건비 지급 시 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
- ※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미가입시 인건비 집행 불가
- ※ 창업자와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자의 인건비 지급불가**
- ※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 집행 불가



위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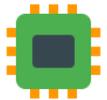


- 4대보험 미가입 단기근로자에게 인건비 지급
- 사업비로 대표자 인건비 지급
- 협약종료 1개월 이내에 고용된 신규직원 인건비 집행
- 사업자 부담 4대보험료 과다 청구
- 실제 근로하기 이전에 인건비 사전 지급

지급수수료

정의 사업화를 위해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 총 13개 항목 (기술이전비 외)



기술이전비

창업기업의 시제품제작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전 받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으로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의 이전, 법적 권리를 보장 받는 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집행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창업기업, 재직 임직원들(4대 보험 가입)의 학회 또는 세미나 참가비(등록비)를 집행 가능. 단,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학회, 세미나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 가능**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통역비 등에 한하여 집행. 단,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전시회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 가능**



시험·인증비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집행



멘토링비

창업아이템 사업화, 기업 경영을 위해 주관기관 내·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 또는 멘토링을 지원받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 전문가 기준은 통합관리지침 제11조 준용, 전담멘토 및 주관기관(전담조직) 소속 인력에게 집행 불가
* 125,000원 초과하는 멘토비 집행 시 기타소득세(8.8%) 공제 후 집행(상위법 기준)



기자재임차비

창업아이템 사업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부수 기자재, 서버 등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 주관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서 기자재 임차 시 해당기관의 내부기준단가 적용

지급수수료

정의 사업화를 위해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 총 13개 항목 (기술이전비 외)



사무실임대료

창업 아이템 개발 등을 위해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 임대료
* 주관기관 담당자가 수시로 해당 공간 방문 등을 통하여 사무실 임차여부 확인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창업기업 창업아이템의 운반, 수출 시에 발생하는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의 실 소요비용 집행



법인설립비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 시 소요비용(잔액고 증명 수수료, 법인등록면허세, 법인등기수수료) 집행



회계감사비

창업기업의 협약종료 시점에서 전담기관장 또는 주관기관장이 지정한 회계법인 감사에 따른 비용(500,000원)을 의무계상



세무·회계비

기장대행 수수료, 법인·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수수료 관련 비용으로 집행
* 중기부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는 세무·회계비 집행 불가



기술보호비

기술 임치(갱신) 수수료로 집행
* 중기부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는 기술보호비 집행 불가



수리비

(중고)기계, 설비, 비품의 고장, 파손으로 정상 작동이 어려운 경우 수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지급수수료

유의사항



기술이전비

- ① 기술이전과 관련된 절차와 집행과정은 이전기관 내부의 규정을 우선하며,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 전담기관장 또는 주관기관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형태로 진행
- ② 기술이전 계약 시 기술의 명칭, 이전금액, 사용기간, 이전내용, 이전절차 등이 명시된 기술이전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이전비 집행 시 기술이전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
- ③ 법인기업은 법인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원칙
- ④ 기술이전 금액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평가금액에 한해 인정하며, 기술이전 금액산출을 위한 평가비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
 - * 단, 기술평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특허청 산하 발명진흥회 지식재산중개소가 운영하는 국가지식 재산거래플랫폼(<http://www.ipmarket.or.kr>)을 활용한 특허거래 전문관의 중개로 가격산정 및 거래협상이 된 경우 기술이전비 집행 가능
- ⑤ 창업자 본인이 발명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특허의 권리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중 발명보상금 등 보상금 성격의 비용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시험·인증비

- 제품 인증의 경우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 비용과 인증비용 및 컨설팅 비용에 한하여 집행 가능하며, 협약기간 내 인증이 완료되어야 함
- * 인증에 컨설팅이 수반되는 경우, 참여 컨설턴트 이력, 컨설팅일지 등 관련 보고서를 함께 제출



멘토링비

멘토링비는 멘토 1인당 1일 30만원 초과 불가



기자재임차비

- ① 차량(승용차, 화물차, 이륜자동차 등) 등의 임차 경비는 집행 불가
- ② 기자재 임차료는 협약일 이내의 월 납부 금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

지급수수료

유의사항



사무실임대료

- ① 정부, 지자체 등이 지원하여 조성·운영 중인 공간(BI,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의 임대료는 집행 불가
- ② 임대 보증금, 관리비는 집행 불가
- ③ 창업 아이템 개발·생산을 위한 사무공간의 임대가 아닌, 거주형태 공간의 임대료 집행 불가
- ④ 코워킹스페이스(공유 사무공간)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해당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월 단위 계약 시 집행 가능, 이외의 “전대차 계약”은 집행불가



법인설립비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



세무·회계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지원서비스바우처’ 사업 선정자는 집행 불가



기술보호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지원서비스바우처’ 사업 선정자는 집행 불가

여비

정의 대표, 재직 임직원이(4대 보험 완료) 사업화를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소요되는 여비

- 항공, 선박 등 해외 이동수단에 소요되는 실비에 한하여 집행 가능

유의사항

- ※ 본 사업의 여비는 **타 국가(해외) 출장**의 경우에만 국한하여 지원
- ※ 국외 출장 사유 발생 시 출국일 이전에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통하여 해외 여비 집행의 적정성을 필히 검토
- ※ 운임은 Economy Class급으로 한정
- ※ 공항버스·기차 등 공항으로 이동을 위한 국내 여비는 창업활동비를 활용

교육훈련비

정의 창업기업 대표, 임직원(4대 보험 완료)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창업기업에 소속되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임직원에게 한함

유의사항

- ※ 사업비 지급 신청 시 임직원재직 확인을 위한 4대 보험가입자명부 제출
- ※ 고용노동부 등의 교육비 환급과정 교육 참가시 환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한하여 지급가능
- ※ 고용노동부 등이 주관하는 교육의 '본인부담금'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광고선전비

정의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제작 비용* 및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홈페이지, 홍보영상, 홍보물, 카탈로그 포장디자인,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신문 등 광고비, 온라인쇼핑몰 입점비, 온라인홍보비, 앱(App)스토어 등록비 등

- 마케팅을 위해 계약,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외주용역비 기준, 유의사항 준용
- 외주용역비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분할지급(선금금(중도금), 잔금)으로 집행 가능. 선금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선금금보증보험증권을 주관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이행보증각서로 대체 가능

유의사항

※ 웹 호스팅비, 도메인 등록비 등의 소요비용은 협약기간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

※ 일회성 무작위 홍보를 위한 배포용 기념품제작(부채, 샘플화장품 등), 유니폼제작, 기프티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집행 불가

※ 모든 광고·선전 활동은 협약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협약 기간 이후 잔여금액의 발생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비즈머니 등) 구매 불가

창업활동비

정의 창업기업의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여비, 문헌구입,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월 50만원 한도로 지급

유의사항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 계좌로 지급

기타 유의사항

유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위반사례



- (사례 1) 예비창업패키지 선정자 A 씨는 직원 2인(B,C)을 고용(근로계약 체결) 직원 2인(B,C)과 협의하에 계약서에 명시된 인건비 중 일부를 직원 2인으로 부터 반납 받아 프리랜서 활용(개발 업무 일부) * 사전 직원과 협의를 하였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
→ **사업비 전액 환수, 참여제한 1년, 제재 부가금 부과 예정(최대 5배)**
- (사례 2) 예비창업패키지 선정자 A 씨는 외주용역비를 과다 계상하고 외주용역 업체에페이백을 받는 형식으로 외주용역비 일부를 편취, 조사 진행 과정에서 외주용역비를 편취한 사실을 대표자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모든 일은 부하직원 B 씨가 편취하였다고 증언 * 페이백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B씨의 편취 부분 존재
→ **사업비 전액 환수, 참여제한 3년, 제재 부가금 부과 예정(최대 5배)**

